

학술연구위원회 규정

(제정 1996. 3.25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설치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술연구위원회(이하 위원회 “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9.3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4.9.3., 2019.3.1.>

1. 교원연구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3.1.>
2. 교내 연구비 지원 및 연구과제 선정, 평가, 집행,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3.1.>
3. 일반 연구교수의 임용심사 <신설 2014.9.3.> <개정 2019.3.1.>
4. 부설연구소의 설치, 지원,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3.1.>
5. 연구업적 심의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3.1.>
6. 그 밖에 연구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<개정 2014.9.3., 19.3.1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<개정 2012.5.31., 2014.9.3., 2019.3.1.>

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 <신설 2014.9.3.>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4.9.3.>

④ 위원은 산학협력단장, 산학협력부단장, 교무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12.5.31., 2014.9.3., 2019.3.1.>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9.3.1.>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9.3., 2019.3.1.>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<신설 2014.9.3.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4.9.3.>

제5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주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3.>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9.3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